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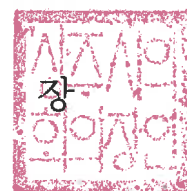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34호

「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「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, 위탁료, 관리비, 수탁자의 의무, 계약해지, 보험가입, 이용료, 이용제한 등을 규정함(안 제4조~안 제12조)
- 기타 수탁자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준용규정을 규정함(안 제13조~안 제 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2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kysky664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

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 ⇨ 의정소식 ⇨

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